

#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



금융감독원

#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

(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)

## I. 안내의 목적

-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,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,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자금을 납입합니다.
-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안내해 드림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### 연금저축 꼭 알아야 할 6가지

- ①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
- ②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
- ③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
- ④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
- ⑤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
- ⑥ 연금수령액 연 1,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## Ⅱ. 연금저축 꼭 알아야 할 6가지

### 1 2014년부터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

-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, 금년부터 세액공제(13.2%\*)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\* 지방소득세 포함(이하 모든 세율 표기에서 동일)

- 연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52만 8천원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세제상 유리(일시금 등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초과시 불이익)

###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

-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,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.

-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, 정기납입 상품 선택시 납입기간(예 : 20년) 동안 지속 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기납입 상품인 연금저축보험도 가입 이후 납입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대부분 가능하며, 보험료의 추가 납입도 가능

###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

-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 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지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.

-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갈아타야 불이익\*이 없습니다.

\*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

※ **[계좌이체 간소화]** 계좌이체를 위해 현재 기존 회사 및 새로 가입할 회사 등 2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나, 2015년 4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

####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

-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(세액)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(16.5%)를 부과합니다.

-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,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다더라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※ 2013.3.1.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.2% 별도 부과

- 다만, 소득(세액)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,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\*되며,

\*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(국세청 발급) 등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 (2014년 해지자도 소득(세액)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동 서류 금융회사 제출시 소득세 환급 가능)

- 가입자의 사망, 파산,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\*이 적용됩니다.

\* 2014년까지 13.2%, 2015년부터 3.3~5.5%

## 5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

-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수령시 소득세(3.3~5.5%)\*를 납부하게 됩니다.

\* (확정형 연금) 55~70세 미만 5.5%, 70~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  
(종신형 연금) 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

### [연금저축 납입시 절세효과 분석<sup>(주)</sup>]

| 가입기간 중 1천만원 납입 ⇒ 소득세 132만원 환급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연금 수령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중도 해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세 33~55만원 부과<br>(77~99만원 이익, 7.7~9.9%) | 소득세 165만원 부과<br>(33만원 손실, △3.3%) |

(주) 연간 세액공제한도(400만원) 내에서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

⇒ 5년 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납입액 기준 7.7~9.9%\* 정도의 세금절감 효과 발생

\* 환급액과 부과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시간가치 및 운용수익은 미고려

## 6 연금수령액 연 1,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-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\*를 해야 합니다.

\*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(소득구간별 6.6~41.8%) 적용

- 연금 장기 수령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낮은 연금소득세율(3.3~5.5%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?

☞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 해야 함.  
다만,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여야 불이익\*이 없음.

\*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 후 금액이 이전됨

◆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?

☞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\*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, 수수료율 등 정보 확인이 가능

\* [http://www.fss.or.kr/fss/kr/popup/pension\\_info.html](http://www.fss.or.kr/fss/kr/popup/pension_info.html)

◆ 소득 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?

☞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나,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 필요

⇒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\*

\*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 필요

◆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?

☞ 해지시 소득(세액)공제 받은 원금에 16.5%\*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

\* 사망, 파산,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 낮은 소득세율 (2014년까지 13.2%, 2015년부터 3.3~5.5%)이 적용